

여객운송약관

2017. 3.

공항철도주식회사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운임의 지급 및 운송계약의 성립)

제5조(여객운송의 조정)

제6조(여객의 의무)

제7조(운송의 거절)

제8조(승차권 개표 및 집표)

제2장 일반열차 7

제 1절 운임

제9조(여객의 구분)

제10조(여객운임)

제11조(운임계산)

제12조(운임적용)

제13조(단수처리와 자기앞수표 수취 거절)

제 2절 승차권

제14조(승차권 종류)

제15조(1회권 발매)

제16조(교통카드 발급)

제17조(일반다인권 발매)

제18조(정기권 발매 및 반환)

제19조(승차권 사용조건)

제20조(승차권 통용기간)

제21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제22조(승차권 확인 등)

제23조(승차권 무효)

제 3절 여객운송

제24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 제25조(승차변경)
- 제26조(부가운임)
- 제27조(승차권 분실)
- 제28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 제29조(열차운행 지연 및 중단 시 처리)
- 제30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
- 제31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 제32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제3장 직통열차 16

제 1절 직통열차 운임

- 제33조(직통열차 여객의 구분)
- 제34조(직통열차 여객운임)
- 제35조(직통열차 운임지불과 자기앞수표 수취 거절)

제 2절 직통열차 승차권

- 제36조(직통열차 승차권 종류)
- 제37조(직통열차 승차권 발매)
- 제38조(직통열차 다인권 발매)
- 제39조(직통열차 승차권 사용조건)
- 제40조(직통열차 승차권 통용기간)
- 제41조(직통열차 승차권 무효)

제 3절 직통열차 여객운송

- 제42조(직통열차 여행시작 후 승차하지 않았을 경우)
- 제43조(직통열차 운임반환)
- 제44조(직통열차 부가운임)
- 제45조(직통열차 승차권 분실증명서 발급)
- 제46조(직통열차 운행지연 및 중단 시)

제4장 휴대품 20

- 제47조(휴대 금지품)
- 제48조(휴대품 제한)
- 제49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

제5장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22

- 제50조(이용범위)
- 제51조(탑승수속 거절)
- 제52조(탑승수속여객 의무)
- 제53조(수하물 수탁)
- 제54조(수하물 개장)
- 제55조(손해배상)

제6장 보칙 23

- 제56조(회사의 책임 등)
- 제57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부칙 24

별표 28

- 별표 1(기본운임, 추가운임)
- 별표 2(역간운임)
- 별표 3(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 시 부가운임)
- 별표 4(수도권정기권 이용거리, 운임 및 차감기준)
- 별표 5(독립운임구간용 정기권 운임)

여객운송약관

[제정 2006. 11.28, 규정 제20606055호]
[전문개정 2007. 03.20, 규정 제20607024호]
[부분개정 2007. 05.31, 규정 제20607040호]
[부분개정 2007. 07.30, 규정 제20607046호]
[부분개정 2008. 01.18, 규정 제20608001호]
[부분개정 2008. 07.31, 규정 제20608022호]
[부분개정 2008. 10.09, 규정 제20608032호]
[부분개정 2008. 12.31, 규정 제20608040호]
[부분개정 2009. 07.27, 규정 제20609017호]
[부분개정 2009. 09.11, 규정 제20609036호]
[부분개정 2010. 01.28, 규정 제20610003호]
[부분개정 2010. 10.01, 규정 제20610046호]
[부분개정 2010. 12.29, 규정 제20610056호]
[부분개정 2011. 04.15, 규정 제20611022호]
[부분개정 2011. 06.28, 규정 제20611029호]
[부분개정 2011. 07.27, 규정 제20611034호]
[부분개정 2011. 11.26, 규정 제20611051호]
[부분개정 2012. 02.27, 규정 제20612051호]
[부분개정 2012. 11.12, 규정 제20612111호]
[부분개정 2013. 12.13, 규정 제20613061호]
[부분개정 2014. 06.25, 규정 제20614023호]
[부분개정 2015. 06.27, 약관 제20615016호]
[부분개정 2016. 03.26, 약관 제20616011호]
[전문개정 2017. 03.31, 약관 제206170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은 공항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여객”이라 합니다)과 공항철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과 도시철도법 제34조에 근거한 연락운송, 연계운송 및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연계운송 또는 연락운송을 하는 수도

권 도시철도 기관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요금의 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수송 등은 다른 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특약”이라 합니다)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항철도역에 비치합니다.

④ 회사는 적용법령 개정 등 이 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시 및 비치합니다.

⑤ 연락운송 또는 연계운송 시 공항철도에서는 회사의 약관을 적용하고, 도시철도는 해당 운영기관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차권”이라 함은 무선주파수 방식의 IC칩을 내장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저장(기록)하여 발행되는 “1회용교통카드”, “교통카드”, “수도권정기권”, “RF승차권”을 말합니다.
2. “1회용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합니다)”라 함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 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해당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3. “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개집표기에 접촉만으로 운임이 지급되는 승차권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선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입력(이하 “충전”이라 합니다)하고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운임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 나. “후급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발행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라 함은 청소년 할인대상자가 카드사업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여 사용하는 선급교통카드를 말합니다.
 - 라. “어린이용 교통카드”라 함은 어린이 할인대상자가 카드사업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여 사용하는 선급교통카드를 말합니다.
 - 마. “우대용 교통카드”라 함은 공항철도 일반열차와 수도권도시철도 노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4. “수도권용 정기승차권”이라 함은 수도권 도시철도와 공항철도 환승운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

급교통카드 형태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5. “RF승차권”이라 함은 공항철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다인승차권(이하 “다인권”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공항철도에서 2명 이상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1장의 승차권을 말합니다.
 - 나. “독립운임구간정기권” 이라 함은 사용구간, 사용기간, 사용횟수를 정하여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에서 사용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6. “쿠폰”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한 업체에서 발행한 직통열차 승차권과 교환할 수 있는 승차권교환증을 말합니다.
7. “보증금”이라 함은 여객이 1회권 구입 시 운임 외에 1회권 보증금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도착역에서 보증금환급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카드사업자”라 함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발행사업자 또는 교통카드발행사업자로서 회사와 별도(정산사업자 대행 포함)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9. “신용카드”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국내외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0. “열차”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를 말합니다.
 - 가. “일반열차”라 함은 좌석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역에 정차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 나. “직통열차”라 함은 도중역에 무정차 및 좌석 또는 승차호차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열차로서 일반열차와 운임체계가 다른 열차를 말합니다.
11.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교통카드는 기본운임 차감) 한 때를 말합니다.
12. “여행종료”라 함은 여객이 하차역에서 승차권을 집표(교통카드는 추가운임 차감)한 때를 말합니다.
13. “유아”라 함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14. “어린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15.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6.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17.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18. “국가유공자”이라 함은 아래 각호의 법률에 의한 해당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애국지사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서 정한 부상자
19. “도시철도”라 함은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수도권도시철도 노선을 말합니다.
20. “공항철도”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구간을 말하며 운임체계에 따라 구분합니다.
 - 가. “환승운임구간”이라 함은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 나. “독립운임구간”이라 함은 독립운임체계가 적용되는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21. “연계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 또는 환승운임구간과 독립운임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1장의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와 환승운임구간을 1장의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역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을 말합니다.
24. “항공사”라 함은 회사에 탑승수속 업무를 위탁하고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에 입주한 항공사를 말합니다.
25. “버스”라 함은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는 버스를 말하며 환승운임구간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거리를 통합하여 운임을 계산합니다.
26. “환승”이라 함은 환승운임구간과 도시철도, 버스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운임의 지급 및 운송계약의 성립)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급교통카드를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통열차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발급합니다.

③ 회사는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따라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국세청 승인번호를 기록하여 발급하며, 여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여객과 회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됨과 동시에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1회권, RF승차권을 구입하였을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 때
3. 수도권용 정기승차권(이하 “수도권정기권”이라 합니다)을 충전하였을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시작을 한 때

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과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제5조(여객운송의 조정) ①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지를 관계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또는 열차고장, 철도설비 고장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제6조(여객의 의무) ① 여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운송약관, 철도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직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인승차권일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운송의 거절) ① 회사는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 수 있으며, 여행시작전인 여객은 운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는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철도사업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5. 직통열차의 출발시각 5분전까지 직통열차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6.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유아가 만 13세 이상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8. 여객의 휴대품이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항철도 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9. 질병 등으로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고객이 보호자 또는 의료진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10.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드론, 무선조정 장난감, 자전거 등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작동시키거나 운행·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객을 하차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여행시작 전 : 운임
2. 여행시작 후 : 열차승차전인 경우에는 기본구간의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열차승차 후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8조(승차권 개표 및 집표)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목적지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승차권을 자동개집표기에서 개표 또는 집표하여야 하며, 집표하지 않고 되돌아 갈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실제 이용거리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공항철도와 도시철도를 환승할 경우에는 환승게이트에서 승차권의 정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운임은 추가차감 되지 않습니다.

③ 독립운임구간에서 승차한 경우에는 환승게이트에서 독립운임구간 운임을 차감합니다. 다만, 환승게이트에서 미차감시 하차역에서 차감합니다.

제2장 일반열차

제1절 운 임

제9조(여객의 구분) 여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어른
2. 어린이
3. 청소년
4. 유아
5. 경로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제10조(여객운임) 회사는 정부에서 승인한 별표 2의 여객운임을 적용합니다.

제11조(운임계산) ① 공항철도 운임은 별표 1과 같이 이용거리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연계운송 운임은 독립운임구간과 환승운임구간 운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③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합니다.

제12조(운임적용) ① 어른운임은 제10조의 여객운임을 적용합니다.

- ② 어린이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환승운임구간 : $(\text{어른운임} - 350\text{원}) \times 50\%$ (할인율) = 단수처리
 2. 독립운임구간 : $\text{어른운임} \times 50\%$ (할인율) = 단수처리
- ③ 청소년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환승운임구간 : $(\text{어른운임} - 350\text{원}) \times 20\%$ (할인율) = 단수처리
 2. 독립운임구간 : $\text{어른운임} \times 20\%$ (할인율) = 단수처리
- ④ 정기승차권 운임은 별표 4, 별표 5와 같습니다.
- ⑤ 다음의 여객은 무임으로 합니다.

1. 제9조 제4호~제7호에 정한 여객
 2. 다음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나.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 다.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상이자
 - 라.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⑥ 조조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선후급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오전 06:30분까지 여행시작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호와 같이 승차한 경우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구간이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이거나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독립운임구간에서 승차하여 환승운임구간으로 계속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승차역 시각을 적용합니다.
- ⑦ 유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린이 운임을 적용합니다.
1. 유아가 단체로 여행 할 때
 2.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초과된 유아
다만, 유치원 등 영리단체에서 유아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1호를 적용합니다.
- ⑧ 1회권 어른운임은 100원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단수처리와 자기앞수표 수취 거절) ① 운임 지불 수단은 선후급교통카드, 현금으로 합니다. 다만, 1회권과 수도권 정기권 및 선급교통카드 충전은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운임을 계산할 경우에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환승운임구간
 - 가. 1회권 :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 나. 정기권 :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2. 독립운임구간
 - 가. 1회권 및 정기권 :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 나. 할인운임 : 25원 미만은 버리고, 25원 이상 75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5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3. 청소년은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2.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3. 1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제2절 승차권

제14조(승차권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회권
 - 가. 어른용
 - 나. 어린이용
 - 다. 우대용
2. 선급교통카드(이하 “선급카드”라 합니다.)
 - 가. 어른선급교통카드(이하 “어른카드”라 합니다.)
 - 나. 청소년선급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 합니다.)
 - 다. 어린이선급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 합니다.)
3. 후급교통카드(이하 “후급카드”라 합니다.)
4. 우대용교통카드
 - 가.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 “경로카드”라 합니다.)
 - 나.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 합니다.)
 - 다.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 합니다.)
5. 일반다인권
6. 수도권용 정기승차권(이하 “수도권정기권”이라 합니다.)
7. 독립운임구간 정기승차권(이하 “독립구간정기권”이라 합니다.)

제15조(1회권 발매) ① 1회권은 역의 자동발매기 및 발권기 등을 통해 발매하며 발매일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용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여객이 교통카드 미소지 시 1회권을 다음과 같이 발매합니다.

1. 영수액은 제11조 제2항의 교통카드 기준 여객운임에 100원을 추가하고, 보증금(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결제방법은 현금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보증금을 공제하고 발행합니다.
2. 여객은 하차역에서 1회권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된 1회권은 훼손책임이 여객에 없는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객은 운임변동 시 차액을 정산하고 새로운 1회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제12조 5항의 무임대상자는 직접 자동발매기에 제22조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16조(교통카드 발급) ①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합니다.

② 교통카드는 회사와 카드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공항철도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요청에 따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일반다인권 발매) ① 2명 이상의 여객이 공항철도에서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회사는 1장의 승차권인 일반다인권을 발매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다인권은 단체여행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인솔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다인권은 운임은 해당운임에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무임인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정기권 발매 및 반환) ① 독립구간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독립운임구간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구간, 사용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하며, 기존 이용자의 재발매 시 사용기간 시작일은 재발매 요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 독립구간정기권의 사용횟수는 기기오류, 열차지연으로 인한 미승차 등을 고려하여 15회를 추가한 55회로 하며, 사용기간은 30일간으로 합니다.

3. 여객은 독립구간정기권의 분실 또는 훼손 시 1회에 한하여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실 또는 훼손된 정기권과 동일하게 재발행합니다.

4. 여객은 독립구간정기권을 구입한 후에 운임이 변동되어도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여객은 사용한 횟수가 33회 이하이고 사용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의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독립운임구간 정기권운임에서 사용구간의 여객운임에 사용한 횟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하고 반환합니다.

6. 회사는 정기권 발매를 위해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분실 시 재발행을 합니다.

② 독립구간정기권의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여객은 독립구간정기권으로 사용구간 이외 역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구간을 지나서 하차한 여객은 사용구간 이외의 승차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독립구간정기권 여행시작 시 열차승차와 관계없이 사용횟수 1회를 공제하며, 여객은 미승차를 이유로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여객은 정기권 분실 시 즉시 역에서 재발행을 받아야 하며, 분실로 타인이 사용 또는 환불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수도권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도권정기권 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 시 지정한 사용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60회 사용 시까지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수도권정기권 운임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도권정기권 사용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에 정한 종별 1회권운임을 반환합니다.

3. 여객은 수도권정기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기권을 충전한 운영기관의 역에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반환금액은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카드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 시 반환당일은 제외합니다.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 4에 정한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횟수×별표 4에 정한종별 교통카드운임)

4. 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 제3호와 같이 반환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여객의 착오로 잘못 충전한 정기권 및 사용 중 정기권의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해 반환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6. 제3호의 의한 반환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제13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여객이 정기권을 개표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승차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을 별도로 수수하며 여객의 고의성이 있

을 경우 제26조 1항을 적용합니다.

제19조(승차권 사용조건) ① 여객은 승차열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승차권 1매로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 제5항 제2호의 보호자를 동반하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자는 제외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차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어른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청소년이 어른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용교통카드 또는 우대용 1회권 이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③ 교통카드는 여행시작 시 회사의 자동개입표기에서 개표가 가능하여야 하며, 선급카드는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④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발급사(카드발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른운임이 적용됩니다. 어른운임이 적용된 경우에는 회사는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0조(승차권 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회권, 정기권, 교통카드 : 여행시작 후 5시간 이내
2. 우대용 1회권 : 발매 당일
3. 일반다인권 :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여행시작 후 5시간 이내

② 승차권의 통용기간 계산 시 당일은 영업시작 시각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승차역에서 00시 이후에 출발하는 열차 또는 0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 등에 승차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당일로 봅니다.

제21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신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여객의 연령,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행시작 당시에 사용한 승차권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수도권정기권의 사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남은 잔여횟수가 부족하더라도 남은 잔여횟수를 모두 차감하여 이용 가능하며, 부족한 추가운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전자적 기록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 역에서 여행시작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2조(승차권 확인 등) ① 여객은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은 여행종료 후 보증금환급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우대용 1회권 및 우대용카드
 -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라.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증
 - 마.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제23조(승차권 무효) ① 여행시작 또는 여행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차권을 무효로 합니다.

1.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우대용 1회권, 어린이·청소년·우대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우대용 1회권, 어린이·우대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2조 2항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하거나 사용횟수를 차감합니다.
1. 제7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2. 제48조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제3절 여객운송

제24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를 타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는 여행종료 처리하며 운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및 정기권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사유로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역에서 집표 후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본운임(정기권 1회)

차감을 면제합니다.

제25조(승차변경) ① 1회권 또는 일반다인권 여객은 승차구간을 초과하여 하차 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과 승차구간 운임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권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③ 독립운임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제26조(부가운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부가운임을 면제합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회수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7. 일반다인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8.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9. 승차권을 집표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임지역에서 비운임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항철도역 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승차권 분실) ①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여객은 분실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여객이 여행시작 후에 승차권이 분실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승차구간 운임을 수수하고 분실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교통카드를 분실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은 분실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분실한 승차권의 사용(변경·반환 포함) 기록이 확인 된 경우
2. 분실증명서와 분실승차권 내용이 다를 경우

제28조(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처리) ①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1회권과 교통카드는 여행시작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본운임을 추가 차감합니다.

③ 여행시작 후 5시간이 초과된 정기권의 경우 잔여횟수에서 1회를 추가 차감합니다.

④ 여객은 열차승차 후 하차역에서 집표를 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교통카드 소지 시 : 승차구간 왕복운임에서 기본운임을 공제한 금액
2. 정기권 소지 시 : 사용횟수를 1회 추가 차감하며, 독립구간정기권인 경우에는 제18조 2항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
3. 1,2호 이외 승차권 소지 시 : 승차구간 왕복운임에서 소지한 승차권면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29조(열차운행 지연 및 중단 시 처리) ①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회권 : 승차권 운임
2. 교통카드 : 교통카드 기본운임
3. 일반다인권 : 승차권면 운임
4. 정기권
 - 가. 독립구간정기권 : 정기권구간의 1회권 운임
 - 나. 수도권정기권 : 별표 4에서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② 제1항의 운임반환은 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합니다.

③ 여객은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열차(타 교통수단 제공 포함)로 목적지역까지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운임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제30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 공항철도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제29조의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5,000원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 및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 5,000원
 - 나. 1시간 이상 지연 : 10,000원

제31조(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회사는 승차권면과 전자적 기록사항이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차권면에 표시된 일련번호에 의해 발매 및 사용기록을 조회하여 유효처리하며, 기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제32조(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회권 및 일반다인권은 여행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하며, 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합니다.

1. 1회권 : 승차권 운임
 2. 일반다인권 : 승차권면 운임
 3. 정기권 : 제18조를 적용한 운임
- ② 회사는 발매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반환하며, 1회권보증금은 1회권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반환합니다.

제3장 직통열차

제1절 직통열차 운임

제33조(직통열차 여객의 구분)

- ① 다음과 같이 여객을 구분합니다.
 1. 어른
 2. 어린이
 3. 유아
- ② 유아라도 다음의 경우 어린이로 봅니다.

1. 유아가 단체로 여행 할 때
 2.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초과된 유아
 3. 유아에게 좌석을 지정할 때
- ③ 유치원 등 영리단체에서 유아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제34조(직통열차 여객운임) ① 회사는 정부에서 승인한 별표 2의 직통열차 여객운임을 적용합니다.

- ② 운임계산 시 단수처리는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 ③ 2가지 이상의 운임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운임할인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자와 할인금액은 공항철도 역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35조(직통열차 운임지불과 자기앞수표 수취 거절) ① 운임 지불의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후급교통카드, 현금, 신용·체크카드(500원 미만 제외), 쿠폰
 2.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간 혼용하여 지불할 수 없습니다.
 3. 직통1회권 보증금(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신용카드로 지불된 승차권이 변경, 예약취소 및 반환 등으로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거나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자기앞수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2. 10만원 초과하는 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제2절 직통열차 승차권

제36조(직통열차 승차권 종류) 직통열차 승차권(이하 “직통승차권”이라 합니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어른 직통승차권

2. 어린이 직통승차권
3. 할인 직통승차권
4. 직통열차 다인승차권(이하 “직통다인권”이라 합니다.)

제37조(직통열차 승차권 발매) ① 직통승차권은 역 고객센터 또는 직통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합니다.

② 할인대상자는 여행시작 전에 할인 직통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여행시작 이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직통승차권은 직통열차1회용교통카드(이하 “직통1회권”이라 합니다)와 영수증(좌석표)으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열차정보를 담고 있으며, 여객은 직통1회권과 영수증(좌석표)을 여행 종료시까지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직통1회권 : 직통열차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2. 영수증(좌석표) : 승차일자, 승차시간, 좌석번호, 운임영수 내용 등

④ 여객은 직통1회권 보증금(500원)을 지급하고, 여행종료 후 보증금환급기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⑤ 회사는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객이 제46조 제4항에 정한 지연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하여 직통승차권을 발매합니다.

⑥ 현금결제인 경우에는 영수증(좌석표)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8조(직통열차 다인권 발매) ① 2명 이상의 여객이 공항철도에서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회사는 여러장의 직통1회권 대신 1장의 직통다인권으로 발매 할 수 있습니다.

② 직통다인권은 단체여행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인솔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직통다인권 운임은 해당운임에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할인율 및 인솔자 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9조(직통열차 승차권 사용조건) ① 여객은 승차열차에 유효한 직통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통승차권 1매로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차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른 승차권을 어린이 또는 할인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3. 직통1회권으로 동일한 승차구간의 일반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제40조(직통열차 승차권 통용기간) 직통승차권의 통용기간은 지정한 직통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하며, 회사는 통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41조(직통열차 승차권 무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통승차권을 무효 처리합니다.

1. 할인대상이 아닌 여객이 할인 직통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 직통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3.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였을 때
4. 통용기간이 지난 직통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5. 할인직통승차권의 경우 해당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통열차를 이용하였을 때

제3절 직통열차 여객운송

제42조(직통열차 여행시작 후 승차하지 않았을 경우) 여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를 승차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승차권을 집표 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43조(직통열차 운임반환) ① 회사는 여객이 직통승차권을 구입 후 여행을 보류하거나 다른 열차로 이용할 경우 운임을 반환 합니다

② 여객은 운임반환 사유 발생 시 여객이 지불한 운임을 초과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운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직통1회권과 영수증(좌석표)을 소지하였으나 훼손으로 직통승차권의 발매 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2. 직통1회권을 소지하지 않고 영수증(좌석표)만 소지한 경우
3. 이미 자동개집표기에 개표 기록이 있는 경우
4. 직통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44조(직통열차 부가운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어른운임(어린이는 어린이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열차 내에서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4.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5. 직통다인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6.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7. 제 4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직통열차 승차권 분실증명서 발급) ① 회사는 여객이 직통승차권을 분실하여 추가로 운임(부가운임 포함)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증명서를 발행합니다.

② 여객은 분실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직통승차권과 분실증명서를 공항철도 역에 제출하고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을 청구 받은 경우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분실한 승차권의 사용(변경·반환 포함) 기록이 확인 된 경우
2. 분실증명서와 분실승차권 내용이 다를 경우
3. 직통1회권이 없는 경우

제46조(직통열차 운행지연 및 중단 시) ① 회사는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을 반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이 없는 것이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운임반환의 경우 여객은 1년 이내에 환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객은 직통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공항철도 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여객이 승차한 직통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지연료로 5,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3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4장 휴대품

제47조(휴대 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역내로 들어오거나 열차에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은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하여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예외로 합니다.
3.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풍선류, 등)

② 회사는 여객의 휴대품 중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경찰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휴대품 제한) ① 여객은 중량이 32kg 이상 또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58cm 이상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으며, 1인당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여객은 제1항의 규격제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접이가 가능한 운동 및 오락용구로써 중량이 32kg 이하 이고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m이내인 경우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3. 당일 항공기 이용객으로서 직원이 타 여객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대승차를 승인한 물품

③ 자전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열차에 한해 휴대승차할 수 있습니다.

1.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2. 평일은 직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승차와 하차역이 공항철도 역인 경우에 한함)

④ 제3항에 의해 자전거 휴대승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역에 하차 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호차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열차운행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여객이 자전거 휴대승차로 인해 자전거의 파손, 분실,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9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경우) 여객이 제47조와 48조에 정한 휴대승차 금지물품을 휴대승차한 경우에는 다음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부가운임을 부과합니다.

제5장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제50조(이용범위) ① 탑승수속 서비스는 직통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제공되며, 탑승수속 시 직통승차권을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탑승수속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탑승수속 업무시간은 오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입니다.
2. 탑승수속의 마감시간은 탑승수속 완료시각 기준으로 탑승항공기 출발시각 3시간 전으로 합니다.
3. 탑승수속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의 좌석배정, 수하물 수탁 등 회사가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한합니다.
4. 탑승수속 이외에 출국수속, 세관신고, 검역신고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탑승수속객의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1조(탑승수속 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탑승수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사의 요구 또는 정부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체크인시스템 또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장애로 단시간 내에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탑승수속이 일시에 증가하여 마감시간 내에 탑승수속이 어려울 경우
4. 열차사고, 열차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시간촉박,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해당 항공사의 제한사항에 의거 탑승수속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한 경우

6. 탑승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탑승수속 후 제시한 직통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② 여객은 제1항에 의해 탑승수속이 거절된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과 출국수속 등을 하여야 하며, 탑승수속 거절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52조(탑승수속 여객 의무) ① 탑승수속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탑승수속 여객은 일체의 여행서류, 비자를 취득하는데 책임을 지며 탑승수속객이 입국 또는 일시 체류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및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탑승수속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범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탑승수속 여객은 세관 및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에 응해야 하며 수하물 검사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② 탑승수속 여객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3조(수하물 수탁) ① 회사는 해당 항공사에서 정한 수하물 수탁규정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수하물에 대해 해당 항공사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중량, 부피에 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③ 회사는 수하물처리시스템의 고장, 위탁수하물의 처리용량 초과 등 이례사항 발생 시 수하물위탁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탑승수속 여객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수하물 개장) ① 탑승수속 여객은 수하물의 보안검색을 위해 일정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제한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하물 개장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탑승수속 여객의 수하물 개장 입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의로 개장하고 그 사실을 탑승수속 여객에게 통보합니다.

제55조(손해배상) 탑승수속 여객은 수하물의 훼손, 분실, 탁송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항공사는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합니다.

제6장 보칙

제56조(회사의 책임 등) ① 회사는 열차고장, 선로장애, 파업, 노사분규 등 회사의 책임으로 제5조에 정한 운송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운임의 범위 내에서 반환합니다.

② 회사는 여객운송 중 발생한 여객사상사고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여객이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이나 이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여객의 휴대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확도, 신뢰도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3자 상호간의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7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률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과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에 불구하고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관할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특별할인 시행만료일) 다음 각 호의 운임할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다만 2호, 3호, 4호의 경우로서 시행만료일이전에 발매된 경우에는 시행만료일에 불구하고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통열차 이용자에 대한 특별할인운임 3,100원 적용
2. 정기승차여객에 대한 운임할인
3. 승차권 다량구매자에 대한 운임할인
4. 계약수송에 의한 운임할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특별할인 특례) ① 시행만료일 이전에 제34조 제4항에 의해 할인하여 발매된 승차권은 할인기간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차권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청라국제도시역 개통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7.3.31.>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 기본운임, 추가운임

□ 기본운임 (10km 까지)

열차별	구간별	기본 운임
가. 일반열차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역	1,250원
	청라국제도시역 ↔ 인천국제공항역	900원
나. 직통열차	서울역 ↔ 인천국제공항역	2,900원

□ 추가운임

열차별	추가운임
가. 일반열차	환승운임구간 10km초과 50km까지 : 5km마다 100원
	50km초과 시 : 8km마다 100원
	독립운임구간 10km초과 시 : 1km당 130원
나. 직통열차	10km초과 시 : 1km당 248원

[별표 2] : 여객운임

□ 일반열차

(단위 : 원)

역명	서울	공덕	홍대 입구	디지털 미디어 씨티	김포 공항	계양	검암	청라국 제도시	영종	운서	공항화 물청사
공덕	1,250										
홍대 입구	1,250	1,250									
디지털 미디어씨티	1,250	1,250	1,250								
김포 공항	1,450	1,450	1,350	1,350							
계양	1,650	1,550	1,550	1,450	1,250						
검암	1,750	1,650	1,650	1,550	1,350	1,250					
청라 국제도시	1,850	1,750	1,750	1,650	1,450	1,350	1,250				
영종	2,750	2,650	2,650	2,550	2,350	2,250	1,600	900			
운서	3,250	3,150	3,150	3,050	2,850	2,650	1,900	1,400	900		
공항 화물청사	3,850	3,750	3,750	3,650	3,450	3,050	2,300	2,000	900	900	
인천 국제공항	4,150	4,050	4,050	3,950	3,750	3,250	2,600	2,300	1,000	900	900

□ 직통열차

구 간	구 분	운 임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	어 른	14,800원
	어 린이	6,900원

[별표 3] : 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 시 부가운임(건당)

구 분	부가운임	비 고
가. 제47조 1항 1호에 정한 위해물품	100,000원	제47조
나. 제47조 1항 1호 이외의 휴대금지품	10,000원	제47조
다. 휴대제한품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	2,000원	제48조

[별표 4] : 수도권정기권 이용거리, 운임 및 차감기준

□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서울전용	55,000	서울시계내	1,550	1,450

□ 거리비례용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원)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종별(단계)	운임(원)	이용거리		
1	55,000	20Km까지	1,550	1,450
2	58,000	25Km까지	1,650	1,550
3	61,700	30Km까지	1,750	1,650
4	65,500	35Km까지	1,850	1,750
5	69,200	40Km까지	1,950	1,850
6	72,900	45Km까지	2,050	1,950
7	76,700	50Km까지	2,150	2,050
8	80,400	58Km까지	2,250	2,150
9	84,200	66Km까지	2,350	2,250
10	87,900	74Km까지	2,450	2,350
11	91,600	82Km까지	2,550	2,450
12	95,400	90Km까지	2,650	2,550
13	99,100	98Km까지	2,750	2,650
14	102,900	98Km초과	2,850	2,750

□ 수도권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14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별표 5] : 독립운임구간용 정기권 운임

[단위 : 원]

역명	인천국제공항	공항화물청사	운서	영종
공항화물청사	30,600	-	-	-
운서	30,600	30,600	-	-
영종	34,000	30,600	30,600	-
청라국제도시	78,200	68,000	47,600	30,600
※ 해당구간의 여객운임에 40회를 곱하고 15%를 할인한 금액을 적용함				